

학 회 인 준 및 관 리 규 정

제정 1974. 1. 28
개정 1980. 1. 10
개정 1987. 9. 21
개정 1998. 11. 10
개정 2000. 10. 21
개정 2003. 7. 8
개정 2012. 12. 18
개정 2018. 12. 18
개정 2019. 3. 19
개정 2020. 3. 24
개정 2021. 4. 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61조에 의하여 신설학회 인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11)

제 2 조(학회분류 및 정의)

- ① 분과학회는 기간학회, 세부학회, 융합학회로 구분한다.(신설 2020. 3.24)
- ② 기간학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회이다.(신설 2020. 3.24)
 1. 전국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1/2이상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2.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이 인정되는 학문분야를 다루는 학회
 3. 하나의 독립된 치의학 영역으로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
- ③ 세부학회라 함은 기간학회로부터 파생, 발달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이다.(신설 2020. 3.24)
- ④ 융합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회이다.(신설 2020. 3.24)
 1. 3개 이상의 치의학 전문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나 임상분야를 다루는 학회

2. 의학, 공학, 생물학 등의 타 학문분야와 융합된 학문을 다루는 학회

제3조(인준신청 및 심사절차) 학회의 인준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1. 4. 6)

① 학회가 학회인준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학회인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학술활동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8, 2020. 3.24, 2021. 4. 6)

1. ~ 6. (삭제)(2003. 7. 8)

② 인준 신청학회는 제2조에 따라 기간학회, 세부학회, 융합학회 중 해당되는 학회로 택일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 3.24)

③ (가칭)학회가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로 인준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기간학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 3.24, 개정 2021. 4. 6)

④ (가칭)학회의 인준신청은 매년 8월 1일~8월 31일로 하며, 심사대상기간은 신청학회의 마지막 회계연도 최근3년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8.12.18., 개정 2020. 3.24)

⑤ 신청학회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8.)

⑥ 제출된 별지1~2의 학회인준신청서를 토대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점수를 충족하여, 학술위원회의 인준심사에 통과한 (가칭)학회는 학술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가칭)학회의 인준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한다.(신설 2019. 3.19, 개정 2021. 4. 6)

⑦ 학회인준신청서의 미비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통보 전 신청학회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3.19)

⑧ 협회는 서류 심사 결과를 접수마감일 60일내에 신청학회에 통보한다.(신설 2019. 3.19)

⑨ 신청학회는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14일 내로 통보한다.(신설 2018.12.18., 개정 2019. 3.19)

- ⑩ 인준을 신청한 (가칭)학회는 학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⑪ 학술위원회의 인준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의 출석은 위임할 수 없다.(개정 2018.12.18, 2021. 4. 6)
- ⑫ 인준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차기 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인준신청을 할 수 없다. 단, 기간학회 인준심사를 탈락한 경우, 차기년도에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 신청은 할 수 있다.(신설 2018.12.18, 개정 2020. 3.24)

제 4 조(기준) (가칭)학회의 인준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12.18, 2021. 4. 6)

1. 학회창립 후 매년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3년 이상 계속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개정 2021. 4. 6)
2. 학회간의 인원구성의 중복은 고려치 않으나 기간학회의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의 회원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학회의 임원은 기간학회의 회원이어야 함.(개정 2021. 4. 6)
3. 학회의 학문분야는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개정 2000.10.21, 2021. 4. 6)
4. 인준심사 시 관련학회의 의견서 및 대한치의학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24, 2021. 4. 6)
5. 기간학회 또는 융합학회의 경우 3년간 연 1회 이상 학회지 발간 실적이, 세부학회의 경우 자체 학술지가 없을 경우, 별지2의 II-2.를 참고한 논문발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학술활동평가기준이 60점 이상이어야 함.(개정 2003. 7. 8, 2020. 3.24, 2021. 4. 6)
6. 신설학회는 '치과의사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전문과목 기간학회의 명칭과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신설 2021. 4. 6)
7. 상기 기준 이외의 내용은 외국의 현황을 참고할 수 있음.(개정 2021. 4. 6)

제 5 조(취소) 학회가 인준된 후 제4조 규정에 의한 실적이 없어 학술발전에 기여된 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없이 학술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취소를 의결한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2021. 4. 6)

제 6 조(명칭) 학회명칭을 사용할 경우 인준을 받지 않은 학회는 명칭 앞에 “가칭”의 문구를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11.10, 2018.12.18.)

제 7 조(기타)

- ① 학회로 인준되면 협회 분과학회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한치의학회 회원이 된다.(신설 2020. 3.24)
- ② 분과학회의 관리는 분과학회 협의체인 대한치의학회의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 3.24)
- ③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2018.12.18, 개정 2020. 3.24)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인준된 학회는 기간학회로 본다.(신설 2020. 3.24)

학회 인준 신청서

학회명		신청 구분	1. 기간학회 () 2. 세부학회 () 3. 융합학회 () ※ 1개만 체크 표시
회원수		최근 3년 자료제출기준	2018.05.01. ~ 2021.04.30
사무실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사무실)
	직위		긴급 연락처(핸드폰)
	e-mail		

2021. 8. 31.

제출서류

- 1)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 2) 신청 공문 1부.
- 3)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 4) 회원명단 1부.
- 5)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1부
- 6) 기간학회의 의견서 1부(세부학회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및 USB파일로 우편 제출

우편발송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1. 학회의 역사적 배경 및 경위

1. 전신이 있었다면 그 명칭과 존속기간
2. 설립 취지문, 창립총회 회의록(학회 창립년월일)
3. 설립 후의 활동 경과

2. 회원의 구성 및 신상명세서 전산기록

1. 회원명단(가입 및 USB제출)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소속, 전공과목, 연락처, e-mail 등 가입

예)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전공과목	연락처	이메일

2. 현 임원 명단(가입)

3. 학회 회원의 입회 자격

3. 학회로서의 독자성, 필요성(자유롭게 기재)

1. 회원학회로서 귀학회의 역할
2. 회원학회의 특정 분과학회로 보여지는 경우 굳이 독립되어야 하는 당위성
3. 회원학회 중 유사한 명칭이 있다면 그 학회와의 상이점
4. 회원학회 중 유관한 학회가 있다면 그 학회와의 상이점
5. 회원학회 중 학술 활동 또는 학술 내용에 있어 관련이 깊은 학회

4. 국내 학술활동(최근 3년 동안)

1. 총회 : 개최일, 참가자 수
2. 학술대회 : 개최일, 참가자 수, 발표연제수(포스터 포함), 발표논문 심사제도
(자체 평가표에 별도 기재)
3. 그 밖의 학술 모임 : 개최일, 참가자 수(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4. 전국적인 조사 연구
5. 연구비 지급제도, 우수논문 포상제도(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5. 국제 학술활동(최근 3년동안)

1. 국제학회 개최경험 유무 : 학회 주최, 회원 개인 주최(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2. 외국학자 초청 강의 : 일시, 장소, 초청자 명단, 강의 제목(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3. 국제학회와의 관련 유무 : 지부 등
4. 학회 단독 또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국제기관지 편집 발행 유무

6. 학회지 발간

1. 학회지 명:
 2. 학회지 등재 현황: (한국연구재단, SCI, SCI Expanded, 코리아메드 등재 등)
 3. 주된 배포처 :
 4. 게재논문 심사위원 수 :
 5. 발행횟수 :
- 기타 상세 내역은 자체평가표에 기재

7. 학회 운영 상황

1. 최근 3년동안의 결산보고서 등 재무 개요
2. 집행부 구성 현황

8. 회칙(재정 및 개정일자 명시)

[학술활동 평가기준](기간학회, 융합학회 용)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 배점	자체 평가 점수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15	
2. 소규모 학술행사*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4.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포상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1회(5점) 2회 이상(10점)	10	
6.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II. 학회지 발간(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9. 한국연구재단 KCI 및 SCI급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III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		100	

※ 총 평점 60점미만일 경우 탈락조치

※ 1번, 7번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조치

※ * 표기된 항목은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10점, 2019년 5점, 2020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

[학술활동 평가기준](세부학회 용)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배점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15
2. 소규모 학술행사*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4.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포상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5. 국제 초청강의 활동	2회 이상(10점) 1회(5점)	10
6. 국제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II-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이상(25점) 연 3회(20점) 연 2회(15점) 연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9. 한국연구재단 KCI 또는 SCI급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II-2.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 하는 경우(35점)		
7. 논문게재 수*	연 18편 이상(35점) 연 15~17편(30점) 연 12~14편(25점) 연 9~11편(20점) 연 5~8편(15점) 연 3~4편(10점) 연 1~2편(5점)	35
III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또는 9개 항목)		100(또는 95)

※ II -1 또는 II -2 중, 한 항목만 선택하여 기입함.

II -2를 선택하여 작성했을 경우, II -1보다 점수가 5점 낮음.

※ 총 평점 60점미만일 경우 탈락조치

※ 1번, 7번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조치

※ * 표기된 항목은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10점, 2019년 5점, 2020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 : 15점 중 ()점

- 1) 0회 0점, 1회 10점, 2회 이상 15점
- 2)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10점, 2019년 5점, 2020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
- 3) 최저 점수가 0점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 전국규모학술활동 횟수

구분	개최 횟수	학술대회 명	개최장소	참가자 수	발표연제
2018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2019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2020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 증빙서류 1 : 최근 3년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광고 포스터 등

- ※ 학술대회란 사전등록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연자 4인 이상
 - 나. 순 강연시간 6시간 이상
 - 다. 포스터 또는 구연에 대한 시상식
- ※ 학술대회라 함은 보수교육 점수를 획득하는 규모의 학술행사를 의미함.
- ※ 총회행사는 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않음.
- ※ 개최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 국제학회의 지부일 경우, 예외적으로 국제학회의 행사를 인정함.

2. 소규모 학술행사 : 10점 중 ()점

- 1) 소규모 학술행사란 학술대회를 제외한 행사로서, 강연, 심포지엄, 워크숍, 패널토의 등의 형태인 집담회 또는 연수교육을 의미함.
- 2)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회 추가당 3점 (10점)
- 3)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10점, 2019년 5점, 2020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

○ 소규모 학술행사 개최 횟수

구분	개최 횟수	행사명	장소	참가자 수
2018년	0회	2018년도 학술 워크숍		
		제1차 학술집담회		
				
2019년	0회	2019년도 학술 워크숍		
		제1차 학술집담회		
		...		
2020년	0회	2020년도 학술 워크숍		
		제1차 학술집담회		
		...		

※ 증빙서류 2 : 광고 포스터, 행사 안내 이메일 캡처본, 강연자료, 초록집, 행사 책자 등

- ※ 총회행사는 학술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개최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 국제학회의 지부일 경우, 지부의 자체 행사만 인정함.

3. 연구비 지급제도 : 5점 중 ()점

- 1) 있다(5점), 없다(0점)
- 2) 최근 3년안에 지급내역이 1회 이상 있으면 5점 부여.

○ 연구비 지급내역

구분	지급자	지급내역	기간	연구비 지급 사유
2018년	홍길동	1,000,000	2018.05~2018.04	○○○ 개선 연구
	김대한	5,000,000		교정연구
	...			
2019년	김학술			치의학 관련 책자 발간
	...			...
2020년	김치과			치의학 관련 책자 발간
	...			...

※ 증빙서류 3 : 1) 지급내역, 2) 연구비 지급제도 규정 3) 연구비 지급대상 심사 회의록, 4) 계약서, 5) 관련 공문 6) 연구비지급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이 명시된 인쇄물

※ 지급내역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4. 학술상 또는 우수 논문 포상제도 : 5점 중 ()점

- 1) 학술상, 우수논문 포상 또는 학술대회 우수포스터 포상을 의미함.
- 2) 있다(5점), 없다(0점)
- 3) 최근 3년안에 지급내역이 1회 이상 있어야 함.

○ 수상자 현황

구분	수상자	소속	수상내역	부상
2018년	홍길동	홍치과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상장 및 상금
	김대한	한국대	학술지 우수논문상	
	...			
2019년	김학술	한국대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상패
	...			
2020년	김치과	김치과	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상패 및 상금
	...			

※ 증빙서류 4 : 수상자 명단(필수) 및 우수논문 포상제도 규정, 관련 사진, 관련 기사

5. 국제 초청 강의 활동 : 10점 중 ()점

- 1) 0회 0점, 1회 5점, 2회 이상 10점
- 2)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0점, 2019년 5점, 2020년 10점일 경우 0점으로 인정

○ 국제 초청 강의 활동 횟수

구분	초청 횟수	행사명	초청자	소속	국적	발표연제
2018년	1회	춘계학술대회	Dr. David	NY Univ.	U.S.A	...
		...	...	...		...
2019년	1회	추계학술대회	Dr. Chang	Qinghua Univ.	China	...
2020년	0회					

※ 증빙서류 5 : 최근 3년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광고 포스터, 초청서신, 관련사진, 이메일캡처본 등

※ 1, 2 평가항목과 중복인정 가능.

※ 초청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6. 국제 학술대회 개최 : 5점 중 ()점

- 1) 0회 0점, 1회 이상 5점
- 2)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0점, 2019년 5점, 2020년 0점일 경우 0점으로 인정

○ 국제 학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초청 횟수	행사명	행사일자	개최장소
2018년	1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018. 5.10	COEX
		...		
2019년	1회	세계 학술대회	2019. 1.15	김대중컨벤션센터
2020년	0회			

※ 증빙서류 6 : 최근 3년 학술대회 초록집, 광고 포스터, 관련사진 등

- ※ 1, 2 평가항목과 중복인정 가능.
- ※ 국제학술대회 인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대회에 한해 인정함.
- ※ 초청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Ⅱ-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기간학회 및 융합학회 필수 항목)

7-1. 연간 학회지 발간횟수 : 25점 중 ()점

- 1) 학회지는 매 호 2편 이상의 원저, 중설 또는 증례보고가 게재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 2) 타 학회와 공동으로 발행한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0회 0점, 1회 10점, 2회 15점, 3회 20점, 4회 이상 25점
- 4)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8년 5점, 2019년 10점, 2020년 20점일 경우 10점으로 인정
- 5) 0점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 6) 국제학회 지부일 경우, 예외적으로 국제학회지 기준으로 작성함.

○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구분	연간 발간횟수	권호	발행일
2018년	0회	00권 1호	2018년 3월 31일
		00권 2호	2018년 6월 30일
		...	2018년 9월 30일
			2018년 12월 31일
2019년	0회	00권 1호	2019년 3월 31일
		00권 2호	2019년 6월 30일
		...	2019년 9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2020년	0회	00권 1호	2020년 3월 31일
		00권 2호	2020년 6월 30일
		...	2020년 9월 30일
			2020년 12월 31일

학회지 게재사이트	https://www.kda.or.kr/kda/kdaJournalOpen/kdaJournalOpenCont1/journal_listkda
-----------	---

※ 증빙서류 7 : 최근 3년 발간 학회지 각 1부

- ※ 해당 학회지의 발행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 온라인만 발간하는 경우, 게재 사이트 적시
- ※ 국내학회와 공동학술지의 경우 불인정

II-2.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논문게재 : 35점 중 ()점

7-2. 학술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논문게재: 평균()편

- 1)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경우, 대한치의학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관련 기간학회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 2) 점수를 획득하려면 Acknowledgement에 '본 논문은 OO학회의 학술활동의 결과임'의 형식으로 세부학회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3) 최근 3년의 게재편수를 평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연 18편 이상(35점), 연 15~17편(30점), 연 12~14편(25점), 연 9~11편(20점), 연 5~8편(15점), 연 3~4편(10점), 연 1~2편(5점)
- 4) 0점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 연간 논문 게재횟수

구분	연간 게재횟수	학술지	권호	발행일
2018년	0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00권 1호	2018년 3월 31일
		대한치의학회지	00권 2호	2018년 6월 30일
		...	...	2018년 9월 30일
		...	...	2018년 12월 31일
2019년	0회	...	00권 1호	2019년 3월 31일
		...	00권 2호	2019년 6월 30일
		...	...	2019년 9월 30일
		...	...	2019년 12월 31일
2020년	0회	...	00권 1호	2020년 3월 31일
		...	00권 2호	2020년 6월 30일
		...	...	2020년 9월 30일
		...	...	2020년 12월 31일

※ 증빙서류 7 : 최근 3년 게재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목차, 판권기, 논문 첫 페이지 사본

※ 게재 논문 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온라인만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게재 사이트 적시

8. 게재논문 심사제도 시행 : 5점 중 ()점

- 1) 시행하지 않음 0점, 시행하고 있음 5점
- 2) 단, KCI 혹은 SCI급 등재 학술지일 경우, 5점 부여

※ 2020년도 첫번째 호 학술지 중 첫 번째 논문과 마지막 논문의 심사서 기준임

▶ 심사서 증빙화면 부문

구분	첫 번째 논문
심사서 1	※ 심사서 건수에 맞춰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삽입하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크기 조정 가능
심사서 2	

구분	마지막 논문
심사서 1	※ 심사서 건수에 맞춰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삽입하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크기 조정 가능
심사서 2	

※ 서명/도장 날인부문, 메일수신화면 또는 심사비 지급내역,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상의 심사화면

※ 증빙서류 8 : 논문투고규정 1부.

9. 한국연구재단 KCI 또는 SCI급 등재 : 5점 중 ()점

▶ 등재일: 2018.01.01.~현재

※ KCI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 SCI 및 SCI-e 모두 인정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 5점 중 ()점

- 1) 준용하지 않음 0점, 준용하고 있음 5점
- 2) SCI급 등재지일 경우, 예외사항을 두어 5점 부여
- 3)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 발간하는 학회지는 치의학용어집을 준용한 것과 같은 5점을 부여한다.

○ 학회지 투고규정 중 치의학용어집 준용 여부 확인

※ 투고규정 중 치의학용어집 준용 부분 캡처

Ⅲ 학회 운영(10점)

11. 자체 홈페이지 운영 : 5점 중 ()점

- 1) 없다 0점, 있다 5점

학회 홈페이지	www.kda.or.kr
---------	--

12. 소식지 등 발간 : 5점 중 ()점

- 1) 0회 0점, 1회 이상 5점

○ 소식지 발간횟수

구분	연간 발간횟수	발행호	발행일
2018년	2회	2018년 1호	2018년 6월 30일
		2018년 2호	2018년 12월 30일
		...	...
2019년	2회	2019년 1호	2019년 3월 31일
		2019년 2호	2019년 6월 30일
		...	...
2020년	2회	2020년 1호	2020년 6월 30일
		2020년 2호	2020년 12월 30일
		...	...

※ 증빙서류 9 : 최근 3년동안 발간 소식지 각 1부

※ 온라인 발간의 경우, 관련 화면 캡처본